C - 40 - 2011

## 갱폼(Gang form)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(이하 '안전보건규칙'이라 한다) 제330조(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)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갱폼에 대한 제작 시 구비하여야 할 안전상의 설비기준과 사용 시의 안전작업 기준을 정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갱폼의 공장제작 및 현장에서의 조립·사용시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갱폼(Gang form)"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·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·해체작업 및 미장·치장(견출) 작업발판용 케이지(Cage)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.
  - (나) "케이지(Cage)"라 함은 갱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거 푸집 설치·해체작업, 후속 미장, 치장(견출) 등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발판,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 갱폼 거푸집에 결합된 부분을 말 하다.